

일반고용허가제(E-9비자) 와 특례고용허가제(H-2비자) 비교 설명

◀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비교 ▶

| 구 분 | 일반고용허가제 | 특례고용허가제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① 체류 (취업기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년 (E-9 비자) ※ 비전문취업비자(E-9)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(사업주 요청 시 재고용 가능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년 (H-2비자) ※ 방문취업비자(H-2)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(사업주 요청 시 재고용 가능) |
| ② 대상 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어시험 및 건강진단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국,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|
| ③ 취업허용 업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조업, 건설업, 서비스업, 농축산업, 어업으로서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광업 및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|
| ④ 취업절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어시험 → 근로계약 → 비전문 취업비자(E-9)로 입국 → 취업 교육 → 사업장배치 ※ 사업장 변경 제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→ 취업 교육 → 구직등록 → 지방고용노동관서 알선 혹은 자유구직 → 근로계약 후 취업 ※ 사업장 변경 제한 없음 |
| ⑤ 사용자의 고용절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국인구인노력 →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허가 신청 → 고용허가서 발급 → 근로계약 → 입국 후 근무시작 ※ 근로개시 신고 불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국인구인노력 →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 → 근로계약 → 근무시작 및 근로개시신고 ※ 근로개시 신고 필요 |
| ⑥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조업, 농축산업, 어업의 경우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가능 • 건설업, 서비스업은 일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의 합이 고용허용 인원을 넘을 수 없음 |

참고 1 외국인근로자 도입 절차

○ 일반 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 절차

1.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선정 등 주요정책 결정
 - 외국인력정책위원회(위원장: 국무조정실장)에서 심의·의결
 - 도입업종·규모, 송출국 선정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
2.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(한국 정부 ↔ 송출국 정부)
 - 송출국 노동행정 관장기관과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
 - 양해각서 이행여부를 평가해 갱신체결 여부 결정
3. 구직자명부의 작성 (송출국 정부 ↔ 우리 정부)
 - 건강진단을 통과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
 - 송출국 정부에서 구직자명부(안)을 작성하면, 공단에서 인증
4. 내국인 구인신청 (사용자 ↔ 고용노동부)
 -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내국인 구인신청(농축산업, 어업 3일 또는 7일, 그 외 : 7일 또는 14일)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 구직자 명부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(3배수 이내)
5. 고용허가서 발급 (사용자 ↔ 고용노동부)
 - 일정한 고용허가 요건(업종 등)을 갖춘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
6. 근로계약 체결 (사용자 ↔ 외국인근로자)
 - 사용자는 자신이 선정한 외국인과 근로계약 체결
 -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(임금,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)
 - 근로계약체결 및 도입 지원은 산업인력공단이 대행
7.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(사용자 ↔ 법무부)
 - 사용자는 법무부에 고용허가서,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·발급(중기중앙회, 농협, 수협, 건설협회 등이 대행 가능)
8.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(사용자 ↔ 외국인근로자)
 - 외국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(E-9)을 발급받고, 일정한 입국 전 교육을 이수한 후에 한국에 입국
 - 국내 입국한 외국인은 건강진단을 받고 취업교육 이수 (16시간 이상,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취업교육기관)
9.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(고용노동부)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(법무부)
 - 고용노동부
 - 입국 초기 모니터링·고충상담, 사업장 지도점검
 - 고용변동신고, 사업장 변경(휴·폐업, 임금체불 등), 재고용허가
 - 법무부
 - 외국인등록, 체류기간연장, 근무처 변경
10. 귀국지원 (고용노동부)
 - 취업활동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
 - 경력증명서 발급, 귀국 후 취업알선 등

○ 특례 외국인근로자 선정·취업절차 (H-2 비자)

